

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규정

- 제정 : 2016. 3. 9.
- 개정 : 2018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내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사선안전관리자, 방사선작업종사자, 해당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해 심의한다.

1.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2.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3. 방사선안전관리 관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확보 등에 관한 사항
4. 기타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3-0-36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규정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